#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96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이건태·문진석·장종태

박지혜 • 조계원 • 서미화

박수현 • 조인철 • 이수진

황 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함.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천 건이며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86%를 차지함.

이러한 노인학대 신고의 증가와 가정이라는 범죄발생 장소의 특수 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유사 입법례에 비해 피 해자 또는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의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2.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4.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

속유기)제1항 · 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카. 제52조제1호, 제53조제1항제2호, 제54조제1호, 제57조의 죄
-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5. "노인학대행위자"란 노인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6.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7. "학대범죄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8. "노인보호사건"이란 노인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인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장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4조(노인학대예방의 날)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 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 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 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3.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4.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5. 학대받는 노인의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6.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7.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8.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9.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10.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 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 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제9조(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위탁할 수 있다.
  -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 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 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

- 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노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7.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 10.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 11. 「노인복지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
- 13.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 14.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 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노인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 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⑥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⑦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 ⑧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 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 ⑨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인 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허가·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및 확인·점검 결과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금지행위로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 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 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

- 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 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른 처분을 받거나 제52조제1호·제53조제 1항제2호 또는 제54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제8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 ② 쉮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3.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4.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 적인 의료비 지원
- 5.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6.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과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쉼터의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쉼터의 입소·이용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 및 보 호자를 포함한 학대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 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⑤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제17조(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 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노인학대범죄 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8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 대원
-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 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1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 ⑤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 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

- 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19조(현장출동)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 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대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응급조치)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노인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부터 제7조의 조

치를 하여야할 의무는 사법경찰관리에 한한다.

- 1. 노인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2. 노인학대행위자의 학대범죄피해노인으로부터의 격리
- 3.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노인학대 관련 보호시설로의 인도(학대피해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긴급 치료가 필요한 학대범죄피해노인의 의료기관에의 인도
- 5. 노인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재발 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
- 6. 제48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7.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②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대범죄피해노인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학대범죄피해노인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 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응

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4호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가 학대피해노인을 인도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노인학 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노인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 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노인학대범죄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25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 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2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노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있다.
  - ②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 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2 1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 으로부터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2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 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 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24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노인학대 관련 형사사건 및 노인보호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될 수 있다.
  - ② 법원은 학대범죄피해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학대범죄피해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제25조(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노인학대범

- 죄의 학대범죄피해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노인보호 절차 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학대범죄피해노인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노인보호 절차에서 학대범죄피해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학대범죄피해노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노인 보호 절차에서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야 한다.
- 제26조(준용) 노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

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은 "노인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학대범죄피해노인"으로 본다.

#### 제4장 노인보호사건

- 제27조(관할) ① 노인보호사건의 관할은 노인학대범죄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② 노인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 제28조(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노인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학대범죄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5.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6.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노인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5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노인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학대 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학대범죄피해노인을 보

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9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노인학대행위자의 보조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노인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제6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2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수 있다.
  - ②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31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노인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

- 인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 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 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노인학대행위자가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아니하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있다.
- 제32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노인학대범죄에 대하여 노인 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 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노인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 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노인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노인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억수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노인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이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학대범죄피해노인 보호와 노인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에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노인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할 수 있다.
  -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 2. 노인학대행위자와 학대범죄피해노인과의 관계
  - 3. 노인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 4. 가정보호의 필요성
- 5.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 제34조(노인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노인학대범죄로서 제33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35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34조에 따라 노인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노인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제36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제37조(송치 시의 노인학대행위자 처리) ①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노인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제24시간 이내에,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노인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

- 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제38조(송치서) ①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사건을 노인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 제39조(이송) ① 노인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노인학대행위자와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0조(보호처분의 효력)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노인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노인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8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노인보호사건에 관련된 노인학대행위자, 학대범죄피해노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신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 제42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1. 노인학대행위자가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 노인학대행위자가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 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5.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7.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노인학대행위자, 학대범죄피해노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노인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 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⑤ 제1항제5호의 감호위탁기관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수 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3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 제44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① 법원은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노인학 대행위자가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 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 호처분의 이행 실태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노인학대행위자, 학대범죄피해노인, 법정대리인, 변 호사,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6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노인학대행위자가 제42조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 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제35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 2. 제36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노인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 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학 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 제48조(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① 판사는 학대범죄피해노인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수 있다.
  - 1. 학대범죄피해노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학대범죄피해노인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3. 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법원은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학대범죄피해노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노인학대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노인보호사건, 피해자보 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

하는 학대범죄피해노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2. 그 밖에 학대범죄피해노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학대범죄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 까지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9조(비용의 부담) ①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42 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노인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노인학대행위 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노인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노인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0조(준용) 노인학대범죄의 사건 송치, 조사·심리,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가 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노인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노인학대행위

자"로, "피해자"는 "학대범죄피해노인"으로, "가정폭력범죄"는 "노인 학대범죄"로 본다.

- 제51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28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2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노인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50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학대범죄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노인보호사건"으로 본다.

## 제5장 벌칙

-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 2. 폭행이나 협박으로 학대범죄피해노인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
-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 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 해한 사람
  - 2. 제8조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

종노인을 보호한 사람

- 3.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 제5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 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 2.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 자
  - 3. 제48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 4. 제1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노인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1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 원과 그 기관장 및 제18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 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

- 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 3. 제18조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
-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
- ③ 제41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7조(가중처벌) 상습적으로 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2조제1호, 제53조제1항제2호, 제54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58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2호,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 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 2. 제13조제9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 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8조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 외한다.
- 4.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노인보호사건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 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28

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처분 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 람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
- 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
- ④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14제1항제2호 중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를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4조"로 한다.

제39조의15부터 제39조의21까지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 본문 중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 호를 삭제한다.